

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을 먼저 상정을 하였습니다.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재무국장 유의재 재무국장입니다.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1992년도 정수관리 대상물품취득처분안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<참 조>

'92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·처분(안)

1. 제안이유

- 업무량 증가 및 행정업무전산화에 따른 필요물품을 확보하여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고
- 각종 사업실시를 위한 실험연구 기자재를 확보하여 실험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며
- 노후 불량한 정수관리대상 물품을 대체취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소요기준에 부족되는 전자복사기, 행정다기능사무기기, 모사전송기등 행정기본장비와 각종 실험 연구기자재 61품목 117개 물품을 신규취득하고,
- 장기간 사용하여 노후된 행정장비(복사기, 녹화기, 타자기등)와 실험연구 기자재인 현미경, 원심분리기등 19개품목 40개물품을 대체취득(처분 포함)하고자 함.

3. 제안근거

- 지방재정법 제95조(물품관리기준의 설정)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3조 제2항(물품관리기준의 설정)